

# 건설하도급 질서확립에 노력하는 업체 많다

본 협회

최근 우리나라 건설 공사의 부실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혜 수주, 무분별한 덤핑입찰과 입찰담합, 부실자재 사용, 무리한 공사기간의 단축, 하도급비리 및 감리 감독의 부실 등 업계의 각종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가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건설공사의 부조리중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감시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개별 신고사건의 처리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하도급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1 참조).

94년도에는 이러한 하도급 거래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총 382건중 제조업 부분이 96건, 건설업 부분이 28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가 건설 분야에 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설하도급이 경쟁이 극심한 수급사업자 중에서 적격업체가 선정되고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94년도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71건,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66건, 대금지급 지연이 42건, 서면 미교부 7건, 부당감액 5건, 선급금 미지급 2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행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업계가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대부분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 등 불리한 거래 관계의 발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신고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위반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금 관련 이외에도 검사 기준을 갑자기 강화시킨다거나 발주를 변경하는 위반 사례도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으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표 1) 연도별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접수 현황

	'92		'93		'94	
	건수	구성비 (%)	건수	구성비 (%)	건수	구성비 (%)
제조업	68	28.7	148	31.4	96	25.1
건설업	169	71.3	323	68.6	286	74.9
합계	237	100.0	471	100.0	382	100.0

(표 2) 9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건 유형별 분류

구분 업종별	대금 미지급	대금지 연지급	어음 할인료 부담	서면 미교부	부당 감액	선급금 미지급	기타	계
	제조업	23	4	16	1	2	-	2
건설업	71	42	66	7	5	2	7	200
합계	94	46	82	8	7	2	9	248

이러한 유형별 위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하도급대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대금을 일부 원사업자는 자금사정을 들어 수급사업자에게서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선급금 지급을 실제로는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전체 심결 유형의 46%)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어음할인료 미부담이다. 일부 원사업자들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1백%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급사업자의 노임을 몇 개월씩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시중에 할인이 불가능한 어음을 지급할 뿐 아니라 어음할인료까지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일부 원사업자는 3개월내지 5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셋째, 서면 미교부와 부당감액을 들 수 있다.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늦게 교부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 체결당시 공사 대금을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깎는다거나 물가변동분을

공사대금에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하도급 비리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질서 정착에 노력하는 업체들이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가 주종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는 한편 수급사업자의 시공기술이 곧 원사업자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변화도 자율적인 공정경쟁질서 확산의 동기가 되고 있다.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를 계열업체로 등록·지원·육성하는 회사들도 있으며, 건전한 하도급 관계의 형성으로 상호협력관계를 실현하고 있는 건설회사들도 있다.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발전시키고 있는 비교적 우수한 사례를 몇 가지 들기로 한다.

극동건설, (주)신성, 쌍용건설, 삼성건설, 선경건설, LG건설, 임광토건, (주)청구, 화성산업, 현대건설 등 일부 대형 건설 회사들은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공기술의 전문화, 품질의 개선 도모에 역점을 두고 건설하도급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업체는 우수한 협력업체의 육성이 곧 원가 절감과 품질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협력업체를 공종별·지역별로 계열화하고 있다.

공사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5일에서 5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

며, 노임 성공사와 우수협력업체에게는 30일 이내 현금 지급, 구정이나 추석 등 협력업체의 자금성수기에는 최장 30일까지 조기에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협력업체의 은행구조에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쌍용건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공정거래」라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발간,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화나 우편접수 또는 직접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점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그 조치 결과를 5일 이내 통보해주는 고충상담실을 상설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는 발주처로부터의 선급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2개월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지급해 주어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있다.

임광토건의 경우는 하도급관련 분쟁을 자체내에 설치한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지 않고 중기나 자재 사용료 등으로 바로 지불할 수 있도록 어음을 발행할 때 소액으로 지급해 주는 독특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품귀나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나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선급

금과는 별도로 자사에서 구매를 대행해 주고 나중에 기성금에서 분할 공제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자금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면에서도 협력업체의 비용 발생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기성 확정일로부터 어음은 55일 이내 현금은 25일 이내에 지급해 주고 있다.

삼성건설과 현대건설의 경우는 건설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화에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협력업체를 선진국의 전문업체 수준으로 집중 육성시킨다는 목표 아래 선진국의 전문업체와 제휴, 기술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삼성건설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구매실을 신설하여 협력업체에 신기술·신공법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기금 및 경영합리화 자금 지원뿐 아니라 기술전담 지도인력을 파견하여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경영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협력업체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업체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종을 세분화하여 주력협력업체를 지역별·업체별로 정예화 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제도를 도입, 협력업체가 품질시공을 위해 각 현장에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상주시키는 경우 그 인건비등을 공사금액 외로 지급해 줌으로써 공간간의 면밀한 시공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정별 매뉴얼 경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성이나 청구의 경우는 현장 시공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애로점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협력업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협력업체와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 현안문제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기성금에 대해서는 2개월 어음지급이 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목수, 미장공에서 타일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는 공정별 확인점검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청구는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해 자금 지원 뿐아니라 공동연구로 기술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선경건설은 3년마다 협력업체를 심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계열, 최우수 협력업체로 분류하여 각 수준에 맞는 기술 지도, 경영자금, 정보시스템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협력업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회보를 발간하고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LG건설의 협력업체관리는 한마디로 '공정성'의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신규업체 등록심사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등록심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업체등록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으며, 공사수행업체 선정시에도 외주심사위원회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청탁이나 특혜

수주를 없애고 실력있는 우수업체에 입찰 기회가 확대되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화성산업은 91년 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협의회를 만들어 협력업체 하도급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기술교육훈련에 도움을 주고자 사내 교육훈련원을 협력업체에 전면 개방할 뿐아니라 기술연구소와 자료실도 개방하여 각종 기술지원과 공동기술개발의 기회를 폭넓게 주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품질제고의 방안으로 협력업체 대표 이사에게 국한되어 있는 우수업체 포상대상을 우수시원과 기능인력에게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대형 건설회사들은 품질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현장별·공종별 기술 교육과 정기적인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가격뿐 아니라 시공능력, 기술력, 공사실적,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한편 협력업체가 기술개발과 공법 개선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전액 지원해 주거나 신기술개발로 원가절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전액을 보상도 해 주고 있다.

또한 업체마다 품질면이나 안전관리면에서 우수협력업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포상은 물론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우선권, 수익계약우선권과 계약보증금의 면

제 및 해외연수등의 기회도 주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업체와 협력업체간의 공통적인 협력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협력업체의 경영관리 시스템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기술, 행정 및 회계와 관련한 교육과 전산프로그램을 지원해 줌으로써 협력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협력업체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 기성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난을 덜어 주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는 협력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와 관련한 교육, 책자의 발간으로 사전에 범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발전은 협력업체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수급 사업자 쌍방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는 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건설산업 성장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 공정거래 용어사전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국장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쓴 공정거래 필수 용어 해설집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 종 화 저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법으로서 경제 헌법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이 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최근에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조항 등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시정으로 공정거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 과정에서 현재의 법률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대부분이며, 전문기의 경우에도 일일이 관련 사적을 찾아야만 이해가 가능할 정도이다. 이 책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하나하나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신국판/ 248면/ 값 9,000원

성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22-2 삼광빌딩 401호  
전화 742-4527 · 팩스 743-8300